|  |  |  |
| --- | --- | --- |
|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관리**  **임시방법》 발부에 대한 환경보호부의 통지**  環發 [2010] 11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환경보호국: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관리를 규율하고 환경 응급대비책 체계를 완벽히 하고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에 대한 과학성, 실효성, 실행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과 《국가 공공 돌발사건 총체적 응급대비책》, 《국가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및 환경보호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당 부는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관리 임시방법》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부하며,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관리 임시방법  2010년 9월 28일  첨부: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관리**  **임시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이하 환경 응급대비책이라 함) 관리를 규율하고 환경 응급대비책 체계를 완벽히 하고 환경 응급대비책의 과학성, 실효성 및 실행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과 《국가 공공 돌발사건 총체적 응급대비책》, 《국가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및 환경보호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환경보호주관부서, 기업과 사업단위의 환경 응급대비책의 작성, 평가, 반포, 등록, 실행, 수정, 홍보, 교육 및 모의훈련 등 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환경보호부는 전국의 환경 응급대비책 관리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환경 응급대비책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2장 환경 응급대비책의 작성**  **제4조** 환경 응급대비책의 작성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규장, 표준 및 작성지침 등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본 지역, 본 부문, 본 단위의 환경 돌발사건 응급업무의 실제에 부합되어야 한다.  (3) 환경 민감포인트 분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 리스크분석과 환경 돌발사건 응급능력에 어울려야 한다.  (4) 응급인원의 직책 분공이 명확하고 책임을 각 포지션에 분해시켜야 한다.  (5) 응급조치와 응급절차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실행가능성이 강하여야 한다.  (6) 응급보장조치가 명확하고 본 지역, 본 단위 응급업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7) 대비책의 기본 요소가 완정하고 첨부정보가 정확하여야 한다.  (8) 관련 응급대비책과 연결되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장, 그리고 관련 응급대비책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환경 응급대비책 작성지침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에 결부시켜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며, 본 부문 주요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반포,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결부시켜 국가 법정휴일, 국가 중대 활동기간의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작성하는 환경 응급대비책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칙. 이에는 작성취지, 작성의거, 적용범위 및 업무원칙 등이 포함된다.  (2) 응급조직 지휘체계와 직책. 이에는 리더기구, 업무기구, 지방기구 또는 현장지휘기구, 환경 응급전문가팀 등이 포함된다.  (3) 예방 및 경보 메커니즘. 이에는 응급 준비조치, 환경리스크 우환의 조사제거 및 정비조치, 급별 경보지표, 경보 반포 또는 해제 절차, 상응하는 경보조치 등이 포함된다.  (4) 응급처치. 이에는 응급대비책의 가동조건, 정보보고, 사전처치, 급별 호응, 지휘 및 조율, 정보반포, 응급 종료 등 절차와 조치가 포함된다.  (5) 후기처치. 이에는 사후처치, 조사와 평가, 재건 복구 등이 포함된다.  (6) 응급보장. 이에는 인력자원보장, 재력보장, 물자보장, 의료위생보장, 교통운수보장, 치안유지, 통신보장, 과학기술지원 등이 포함된다.  (7) 감독관리. 이에는 응급대비책 모의훈련, 선전교육, 책임 및 상벌 등이 포함된다.  (8) 부칙. 이에는 명사 술어, 응급 대비책의 해석, 수정 상황 및 실행일자 등이 포함된다.  (9) 첨부. 이에는 관련 단위와 인원의 통신부, 표준화 서식문건, 업무처리 흐름도, 응급물자 비축리스트 등이 포함된다.  **제7조** 환경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과 사업단위, 위험물을 생산, 저장보관, 경영, 사용, 운송하는 기업과 사업단위, 위험폐기물을 생성, 수거, 저장보관, 운송, 활용, 처분하는 기업과 사업단위, 그리고 기타 환경 돌발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사업단위는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기업과 사업단위의 환경 응급대비책에는 종합 환경 응급대비책, 전문 환경 응급대비책 및 현장처치 대비책이 포함된다.  환경리스크 종류가 비교적 많고 여러 가지 돌발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기업과 사업단위는 종합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합 환경 응급대비책에는 본 단위의 응급조직기구 및 그 직책, 대비책 체계 및 호응절차, 사건의 예방 및 응급보장, 응급교육 및 대비책 모의훈련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 가지 환경리스크에 대하여, 기업과 사업단위는 그에 존재하는 중대 리스크원과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건의 유형에 따라 상응하는 전문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 환경 응급대비책에는 리스크분석,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특성, 주요 오염원의 종류, 응급조직기구 및 직책, 대비조치, 응급처치절차 및 응급보장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리스크가 비교적 큰 중대 포지션에 대하여, 기업과 사업단위는 중점 업무포지션의 현장 처치대비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처치 대비책에는 리스크분석,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특성, 응급처치 절차, 응급처치 요점과 주의사항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과 사업단위가 작성하는 종합 환경 응급대비책, 전문 환경 응급대비책 및 현장처치 대비책은 서호 호응이 잘 되어야 하며, 아울러 기타 관련 응급대비책과 연결되어야 한다.  **제9조** 공사건설, 영화와 TV촬영, 문화체육 등 단체적 활동이 환경 돌발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주최단위는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임시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업과 사업단위가 작성한 환경 응급대비책에는 이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내용이외에 아래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1) 본 단위의 개황, 주변의 환경상황, 환경 민감포인트 등  (2) 본 단위 환경리스크원의 상황분석. 주로 환경리스크원의 기본상황과 발생 가능한 폐해결과 및 엄중한 정도 포함  (3) 응급물자 비축상황, 단위리스크원의 수량과 성질에 대응하여 비축이 필요한 응급물자 품명과 기본비축량 등.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와 기업 및 사업단위는 전문역량을 동원하여 환경 응급대비책 작성업무를 조직하며, 동시에 대비책과 관련되는 유관단위와 인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유관단위와 인원은 서면 형식으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환경 응급대비책이 중대 공중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작성단위는 사회에 공고하고 공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기업과 사업단위는 관련 전문기술서비스기구에 위임하여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환경 응급대비책의 평가**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환경 응급대비책 초안 작성을 완료한 후 평가팀을 구성하여 본 부서가 작성한 환경 응급대비책 초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 환경 응급대비책 평가팀의 구성인원에는 환경 응급대비책과 관련되는 정부부서의 업무직원, 관련 업계협회 및 중점 리스크원 단위의 대표, 그리고 응급관리와 전문 기술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기업과 사업단위는 환경 응급대비책 초안 작성을 완료한 후 평가팀을 구성하여 본 단위가 작성한 환경 응급대비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과 사업단위 환경 응급대비책 평가팀의 구성인원에는 환경 응급대비책과 관련되는 관련 부문의 응급 관리인원, 관련 업계협회, 인근의 중점 리스크원 단위의 대표, 주변 사회구역(향, 진) 대표, 그리고 응급관리와 전문 기술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환경 응급대비책 평가팀은 환경 응급대비책의 실용성, 기본요소의 완정성, 내용서식의 규범성, 응급 보장조치의 실행가능성 및 기타 관련 대비책과의 연결성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환경 응급대비책 작성단위는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대비책 초안에 대하여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 응급비책의 등록**  **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작성한 환경 응급대비책은 본 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과 사업단위가 작성한 환경 응급대비책은 본 단위 주요책임자의 서명을 받고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가 중점적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의 환경 응급대비책은 본 단위 주요책임자의 서명을 받고 실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공사건설, 영화 및 TV 촬영, 문화체육 등 단체적 활동의 임시 환경 응급대비책은 주최단위가 활동을 개시하는 3일 전에 당지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 시에는 아래의 서류(1식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등록신청표》  (2) 환경 응급대비책 평가의견  (3) 환경 응급대비책의 페이퍼파일과 전자파일.  **제17조** 등록 신청을 수리한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등록서류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서류의 환경 응급대비책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방법 제6조,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평가팀의 평가를 통해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돌발 환경사건 응급대비책 등록등기표》를 제시한다. 이 방법 제6조,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을 불허하고 회신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며, 등록을 신청한 환경보호주관부서 또는 기업이나 사업단위는 스스로 수정한 후 다시 등록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등록신청표》와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등록등기표》의 서식은 환경보호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5장 환경 응급대비책의 실시 및 감독관리**  **제1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 응급대비책의 감독관리를 환경 감독관리의 일상적 중요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2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와 기업 및 사업단위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환경 응급대비책 선전교육을 전개하고 환경 돌발사건의 예방, 위험기피, 자구, 상호구조 및 응급처치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종업인원의 환경 안전의식과 응급처치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2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 또는 기업과 사업단위는 해마다 적어도 1회의 대비책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형식을 통해 유관인원이 환경 응급대비책의 내용을 알게 하고 응급직책, 응급절차 및 포지션 응급처치 대비책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환경 응급대비책 모의훈련 제도를 구축 및 건전히 하고 해마다 적어도 1회의 응급처치 모의훈련을 조직하여야 한다. 기업과 사업단위는 정기적으로 응급처치 모의훈련을 조직하는 동시에 유관부서가 전개하는 응급처치 모의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환경 응급대비책 모의훈련이 끝난 후 관련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와 기업 및 사업단위는 환경 응급대비책 모의훈련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모의훈련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환경 응급대비책 수정에 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2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 또는 기업과 사업단위는 관련 법률과 이 방법의 규정, 그리고 실제 수요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관련 대비책의 작성지침 또는 작성 및 수정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환경 응급대비책을 수정하여야 한다.  환경 응급대비책은 적어도 매 3년에 1회 수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과 사업단위는 지체 없이 수정을 하여야 한다.  (1) 본 단위 제조공학과 기술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2) 관련단위와 인원에 변화가 발생했거나 응급조직지휘체계 또는 직책이 조정된 경우  (3) 주변 환경 또는 환경 민감포인트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4) 환경 응급대비책이 의거한 법률, 법규, 규장 등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5) 환경보호주관부서 또는 기업과 사업단위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상황.  환경보호주관부서 또는 기업과 사업단위는 환경 응급대비책을 수정한 후 30일 이내에 수정한 대비책을 원 대비책 등록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부서는 응급 대비책의 수정 상황에 비추어 대비책을 수정한 환경보호주관부서 또는 기업 및 사업단위에 수정후의 대비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법률적 책임**  **제24조**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하는 환경보호주관부서가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환경 응급대비책을 시의 적절하게 수정하지 않거나 또는 규정한 대로 대비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25조**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하는 기업과 사업단위가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응급대비책을 시의 적절하게 수정하지 않거나 또는 규정한 대로 응급대비책에 대한 평가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을 가한다.  **제26조** 환경보호주관부서 또는 기업과 사업단위가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환경 응급대비책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환경 돌발사건의 발생 또는 폐해 확대를 초래한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적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처분을 주며, 형법을 범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7장 부 칙**  **제27조** 이 방법 중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환경 돌발사건이란 사고 또는 뜻밖의 사건 등 요인으로 인해 환경오염이나 파괴가 초래되어 공중의 생명건강과 재산이 피해 또는 위협을 받게 되는 긴급 상황을 가리킨다.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이란 발생 가능한 환경 돌발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처치를 신속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인원사상과 경제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정하는 사전 계획이나 방안을 가리킨다.  환경리스크란 환경(또는 건강)에 대한 환경 돌발사건의 위해정도를 가리킨다.  리스크원이란 상해나 질병, 재산손실, 환경파괴를 초래하거나 또는 이러한 상황으로 조합된 근원이나 상태를 가리킨다.  환경 민감포인트는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명부》 중 “환경 민감포인트”의 정의를 참조한다.  응급처치 모의훈련이란 응급대비책의 유효성, 응급준비의 완정성, 응급호응능력의 적절성 및 응급인원의 협동성을 검사하기 위해 진행하는 하나의 응급호응을 모의하는 실천 활동을 가리킨다.  **제28조** 이 방법은 환경보호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이 방법에 의거하고 본 지역의 실제에 결부시켜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9조** 이 방법은 발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1: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등록신청표  http://www.zhb.gov.cn/gkml/hbb/bwj/201010/W020101009487542180059.doc  첨부 2: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등록등기표  http://www.zhb.gov.cn/gkml/hbb/bwj/201010/W020101009487542185922.doc |  | **环境保护部关于印发《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管理暂行办法》的通知**  环发[2010]113号  各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环境保护局：  　　为规范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管理，完善环境应急预案体系，增强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的科学性、实效性和可操作性，根据《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国家突发公共事件总体应急预案》、《国家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及相关环境保护法律、法规，我部制定了《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管理暂行办法》。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附件：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管理暂行办法  二○一○年九月二十八日  附件：  **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管理**  **暂行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以下简称“环境应急预案”）管理，完善环境应急预案体系，增强环境应急预案的科学性、实效性和可操作性，根据《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国家突发公共事件总体应急预案》、《国家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及相关环境保护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环境保护主管部门、企业事业单位环境应急预案的编制、评估、发布、备案、实施、修订、宣教、培训和演练等活动。  **第三条** 环境保护部对全国环境应急预案管理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环境应急预案的监督管理工作。  **第二章 环境应急预案的编制**  **第四条**　环境应急预案的编制应当符合以下要求：  　　（一）符合国家相关法律、法规、规章、标准和编制指南等规定；  　　（二）符合本地区、本部门、本单位突发环境事件应急工作实际；  　　（三）建立在环境敏感点分析基础上，与环境风险分析和突发环境事件应急能力相适应；  　　（四）应急人员职责分工明确、责任落实到位；  　　（五）预防措施和应急程序明确具体、操作性强；  　　（六）应急保障措施明确，并能满足本地区、本单位应急工作要求；  　　（七）预案基本要素完整，附件信息正确；  　　（八）与相关应急预案相衔接。  **第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根据有关法律、法规、规章和相关应急预案，按照相应的环境应急预案编制指南，结合本地区的实际情况，编制环境应急预案，由本部门主要负责人批准后发布实施。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结合本地区实际情况，编制国家法定节假日、国家重大活动期间的环境应急预案。  **第六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编制的环境应急预案应当包括以下内容：  　　（一）总则，包括编制目的、编制依据、适用范围和工作原则等；  　　（二）应急组织指挥体系与职责，包括领导机构、工作机构、地方机构或者现场指挥机构、环境应急专家组等；  　　（三）预防与预警机制，包括应急准备措施、环境风险隐患排查和整治措施、预警分级指标、预警发布或者解除程序、预警相应措施等；  　　（四）应急处置，包括应急预案启动条件、信息报告、先期处置、分级响应、指挥与协调、信息发布、应急终止等程序和措施；  　　（五）后期处置，包括善后处置、调查与评估、恢复重建等；  　　（六）应急保障，包括人力资源保障、财力保障、物资保障、医疗卫生保障、交通运输保障、治安维护、通信保障、科技支撑等；  　　（七）监督管理，包括应急预案演练、宣教培训、责任与奖惩等；  　　（八）附则，包括名词术语、预案解释、修订情况和实施日期等；  　　（九）附件，包括相关单位和人员通讯录、标准化格式文本、工作流程图、应急物资储备清单等。  **第七条**　向环境排放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生产、贮存、经营、使用、运输危险物品的企业事业单位，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的企业事业单位，以及其他可能发生突发环境事件的企业事业单位，应当编制环境应急预案。  **第八条** 企业事业单位的环境应急预案包括综合环境应急预案、专项环境应急预案和现场处置预案。  　　对环境风险种类较多、可能发生多种类型突发事件的，企业事业单位应当编制综合环境应急预案。综合环境应急预案应当包括本单位的应急组织机构及其职责、预案体系及响应程序、事件预防及应急保障、应急培训及预案演练等内容。  　　对某一种类的环境风险，企业事业单位应当根据存在的重大危险源和可能发生的突发事件类型，编制相应的专项环境应急预案。专项环境应急预案应当包括危险性分析、可能发生的事件特征、主要污染物种类、应急组织机构与职责、预防措施、应急处置程序和应急保障等内容。  　　对危险性较大的重点岗位，企业事业单位应当编制重点工作岗位的现场处置预案。现场处置预案应当包括危险性分析、可能发生的事件特征、应急处置程序、应急处置要点和注意事项等内容。  　　企业事业单位编制的综合环境应急预案、专项环境应急预案和现场处置预案之间应当相互协调，并与所涉及的其他应急预案相互衔接。  **第九条**　工程建设、影视拍摄和文化体育等群体性活动有可能造成突发环境事件的，主办单位应当在活动开始前编制临时环境应急预案。  **第十条** 企业事业单位编制的环境应急预案中除了本办法第六条规定的内容外，还应当包括以下内容：  　　（一）本单位的概况、周边环境状况、环境敏感点等；  　　（二）本单位的环境危险源情况分析，主要包括环境危险源的基本情况以及可能产生的危害后果及严重程度；  　　（三）应急物资储备情况，针对单位危险源数量和性质应储备的应急物资品名和基本储量等。  **第十一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和企事业单位，应当组织专门力量开展环境应急预案编制工作，并充分征求预案涉及的有关单位和人员的意见。有关单位和人员应当以书面形式提出意见和建议。  　　环境应急预案涉及重大公共利益的，编制单位应当向社会公告，并举行听证。  　　企业事业单位可以委托相关专业技术服务机构编制环境应急预案。  **第三章 环境应急预案的评估**  **第十二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环境应急预案草案编制完成后，组织评估小组对本部门编制的环境应急预案草案进行评估。  　　环境保护主管部门环境应急预案评估小组的组成人员应当包括环境应急预案涉及的政府部门工作人员、相关行业协会和重点风险源单位代表以及应急管理和专业技术方面的专家。  **第十三条**　企业事业单位应当在环境应急预案草案编制完成后，组织评估小组对本单位编制的环境应急预案进行评估。  　　企业事业单位环境应急预案评估小组的组成人员应当包括环境应急预案涉及的相关部门应急管理人员、相关行业协会、相邻重点风险源单位代表、周边社区（乡、镇）代表以及应急管理和专业技术方面的专家。  **第十四条** 环境应急预案评估小组应当重点评估环境应急预案的实用性、基本要素的完整性、内容格式的规范性、应急保障措施的可行性以及与其他相关预案的衔接性等内容。  　　环境应急预案的编制单位应当根据评估结果，对应急预案草案进行修改。  **第四章 环境应急预案的备案**  **第十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编制的环境应急预案应当报本级人民政府和上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企业事业单位编制的环境应急预案，应当在本单位主要负责人签署实施之日起30日内报所在地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国家重点监控企业的环境应急预案，应当在本单位主要负责人签署实施之日起45日内报所在地省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工程建设、影视拍摄和文化体育等群体性活动的临时环境应急预案，主办单位应当在活动开始三个工作日前报当地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第十六条** 报送备案应当提交下列材料（一式二份）：  　　（一）《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备案申请表》；  　　（二）环境应急预案评估意见；  　　（三）环境应急预案的纸质文件和电子文件。  **第十七条** 受理备案登记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收到报备材料之日起60日内，对报送备案的环境应急预案进行审查，对符合本办法第六条、第十条规定并通过评估小组评估的，予以备案并出具《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备案登记表》；对不符合本办法第六条、第十条规定的，不予备案并复函说明理由，由申请备案的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企业事业单位自行纠正后重新报送备案。  **第十八条** 《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备案申请表》和《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备案登记表》的格式由环境保护部统一制定。  **第五章 环境应急预案的实施与监督管理**  **第十九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将环境应急预案的监督管理作为日常环境监督管理的一项重要内容。  **第二十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和企业事业单位，应当采取有效形式，开展环境应急预案的宣传教育，普及突发环境事件预防、避险、自救、互救和应急处置知识，提高从业人员环境安全意识和应急处置技能。  **第二十一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企业事业单位，应当每年至少组织一次预案培训工作，通过各种形式，使有关人员了解环境应急预案的内容，熟悉应急职责、应急程序和岗位应急处置预案。  **第二十二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建立健全环境应急预案演练制度，每年至少组织一次应急演练。企业事业单位应当定期进行应急演练，并积极配合和参与有关部门开展的应急演练。  　　环境应急预案演练结束后，有关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和企业事业单位应当对环境应急预案演练结果进行评估，撰写演练评估报告，分析存在问题，对环境应急预案提出修改意见。  **第二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企业事业单位，应当按照有关法律法规和本办法的规定，根据实际需要和情势变化，依据有关预案编制指南或者编制修订框架指南修订环境应急预案。  　　环境应急预案每三年至少修订一次；有下列情形之一的，企事业单位应当及时进行修订：  　　（一）本单位生产工艺和技术发生变化的；  　　（二）相关单位和人员发生变化或者应急组织指挥体系或职责调整的；  　　（三）周围环境或者环境敏感点发生变化的；  　　（四）环境应急预案依据的法律、法规、规章等发生变化的；  　　（五）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企业事业单位认为应当适时修订的其他情形。  　　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企业事业单位，应当于环境应急预案修订后30日内将新修订的预案报原预案备案管理部门重新备案；预案备案部门可以根据预案修订的具体情况要求修订预案的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企业事业单位对修订后的预案进行评估。  **第六章 法律责任**  **第二十四条** 应当编制或者修订环境应急预案的环境保护主管部门不编制环境应急预案、不及时修订环境应急预案或者不按规定进行预案备案的，由上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改正。  **第二十五条** 应当编制或者修订环境应急预案的企业事业单位不编制环境应急预案、不及时修订应急预案或者不按规定进行应急预案评估和备案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依据有关法律、法规给予处罚。  **第二十六条** 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企业事业单位不编制环境应急预案或者不执行环境应急预案，导致突发环境事件发生或者危害扩大的，依据国家有关规定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章 附 则**  **第二十七条** 本办法中下列用语的含义：  　　突发环境事件，是指因事故或意外性事件等因素，致使环境受到污染或破坏，公众的生命健康和财产受到危害或威胁的紧急情况。  　　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是指针对可能发生的突发环境事件，为确保迅速、有序、高效地开展应急处置，减少人员伤亡和经济损失而预先制定的计划或方案。  　　环境风险，是指突发环境事件对环境（或健康）的危险程度。  　　危险源，是指可能导致伤害或疾病、财产损失、环境破坏或这些情况组合的根源或状态。  　　环境敏感点，参照《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中“环境敏感区”的定义。  　　应急演练，是指为检验应急预案的有效性、应急准备的完善性、应急响应能力的适应性和应急人员的协同性而进行的一种模拟应急响应的实践活动。  **第二十八条**　本办法由环境保护部负责解释。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可依据本办法，结合本地区实际制定实施细则。  **第二十九条**　本办法自印发之日起施行。  　　附一：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备案申请表  <http://www.zhb.gov.cn/gkml/hbb/bwj/201010/W020101009487542180059.doc>  　　附二：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备案登记表  <http://www.zhb.gov.cn/gkml/hbb/bwj/201010/W020101009487542185922.doc> |